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7.

발 의 자 : 위성곤 · 이재관 · 김기표
문대림 · 박정현 · 최혁진
조계원 · 박지혜 · 윤준병
이건태 · 박희승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,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·지출명세서,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, 예금통장 사본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전자문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 전자정부시대에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보고를 하는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 제출받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,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).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회계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회계보고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7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제46조제5호 중 “제40조(회계보고)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”을 “제40조(회계보고)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49조제3항제4호 중 “제40조제5항”을 “제40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회계보고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0조(회계보고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회계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회계보고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7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.</u>
<u>⑤ · ⑥</u> (생략)	<u>⑥ · ⑦</u>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제46조(각종 제한규정위반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46조(각종 제한규정위반죄) --- ----- ----- ----- 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37조(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)제1항 또는 제40조(회계보고)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	5. -----제40조(회계보고)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----- ----- -----

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, 정치자금의 수입·지출금액과 그 내역, 수입·지출에 관한 명세서,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,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·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·위조 또는 변조한 자 6.·7. (생략) 제49조(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) ① . ② (생략) ③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제40조제5항</u>의 규정을 위반한 자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6.·7. (현행과 같음) 제49조(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제40조제6항</u>----- -----
---	---